

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

의 안	
변 호	

제출년월일 : 2008. 5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을 통합 보완한 「도시개발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구미시 도시개발사업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(안 제7조)
 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
3. 참고사항

- 「도시개발법」 제60조제1항
-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68조

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개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구미시도시개발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특별회계의 재원)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 및 영 제68조에 따라 조성한다.

제3조(세출) 특별회계 세출은 「구미시 도시개발 조례」 제12조 및 제13조 규정과 그 밖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.

제4조(전입)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.

제5조(회계공무원) ① 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.

1. 징수관 : 자치행정국장
2. 수입금출납원 : 용지개발담당

② 특별회계 징수관은 투자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투자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6조(회계관리) 도시개발사업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제5조의 회계공무원이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·지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.

제7조(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)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.
- ④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, 회계과장, 건설과장, 도시과장, 시의회의원 3명 이내, 도시계획전문가 3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정원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로 한다.
 - 1. 기획예산담당관, 회계과장, 건설과장, 도시과장 및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 - 2. 도시계획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도시과 용지개발담당주사가 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사업순위결정 및 용자배분
- 2. 「구미시 도시개발 조례」 제13조제2항의 용자목적 용도의 사용여부

제9조(결산 및 보고) ① 도시개발사업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지침에 의거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준용) 특별회계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